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57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10월 30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
2. 사업주체 : 이앤조이앤씨(주) 대표 나춘오, (주)꿈을짓는사람들 대표 정환
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
가. 위 치 : 서구 오류지구 81블럭 24롯트

나. 대지면적 : 11,654.20㎡

다. 연 면 적 : 31,954.6774㎡

라. 사 업 비 : 64,167,770,000원

마. 사업규모 : 지하3층 지상15층 4개동 203세대

4. 사업기간 : 2007.11 ~ 2010.12.1

5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
가.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

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

다.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58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10월 30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2. 사업주체 : (주)프리마건설 대표 김명수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서구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4블럭 1,3롯트
 - 나. 대지면적 : 10,017.6㎡
 - 다. 연 면 적 : 31,994.08㎡
 - 라. 사 업 비 : 77,164,840,000원
 - 마. 사업규모 : 지하2층 지상18 ~ 20층 3개동 207세대
4. 사업기간 : 2007.11 ~ 2010.12
5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가.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
 - 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
 - 다.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59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10월 30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2. 사업주체 : (주)한백씨엔티 대표 이종대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서구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6블럭 1~9롯트
 - 나. 대지면적 : 17,891.50㎡
 - 다. 연 면 적 : 56,848.709㎡
 - 라. 사 업 비 : 148,143,772,000원
 - 마. 사업규모 : 지하2층 지상19~ 20층 4개동 303세대
4. 사업기간 : 2007.11.20 ~ 2010.12.01
5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가.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
 - 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
 - 다.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60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10월 30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
2. 사업주체 : (주)한시스 대표 이종대 외1인
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
가. 위 치 : 서구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74-2롯트

나. 대지면적 : 19,590.40㎡

다. 연 면 적 : 60,819.224㎡

라. 사 업 비 : 158,372,373,000원

마. 사업규모 : 지하2층 지상20층 5개동 348세대

4. 사업기간 : 2007.11.20 ~ 2010.12.01

5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
가.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

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

다.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61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11월 1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2. 사업주체 : 현대주택건설 대표 김종호 외 10인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4블럭 25-1롯트 외 15필지
 - 나. 대지면적 : 4,304.20㎡
 - 다. 연 면 적 : 9,764.4980㎡
 - 라. 사 업 비 : 18,779,196,000원
 - 마. 사업규모 : 지하1층 지상10층 2개동 78세대
4. 사업기간 : 2007.10 ~ 2009.10
5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가.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
 - 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
 - 다.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62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

주택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7년 11월 1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사 업 명 : 민영아파트 건립공사
2. 사업주체 : 현대주택건설 대표 김종호 외 10인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 - 가. 위 치 : 서구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6블럭 2, 4롯트
 - 나. 대지면적 : 4,494.90㎡
 - 다. 연 면 적 : 10,506.3453㎡
 - 라. 사 업 비 : 19,935,608,000원
 - 마. 사업규모 : 지하1층 지상10층 1개동 79세대
4. 사업기간 : 2007.10 ~ 2009.10
5.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 - 가. 건축법 제15조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
 - 나.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
 - 다.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

공 고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927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[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]

1. 자동차관리법 제10조,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, 수취인 미거주, 수취인 부재,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,
2.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07년 11월 1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고기간 : 2007. 11. 1 ~ 2007. 11. 16 (15일간)

2.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		
2. 당사자	성 명 (차량번호)	노금식외 8인 (“불임” 위반차량내역 참조)		
	주 소			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		(“불임” 참조)		
4. 처분하고자하는내용		과태료 부과 및 점검·정비·원상복구 명령		
5. 법 적 근 거		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		
6. 의 견 제 출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명	교통민원과
	주 소	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(심곡동 244) (☎ 560-4872, FAX 560-4869)		
	기 한	2007년 11월 16일까지		
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

-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, 컴퓨터통신,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컴퓨터통신(yut2000@seo.incheon.kr)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